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12. 20(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경표, 김봉건, 박경립, 박언곤, 이상필,
정명섭, 진명(정혜린),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개
2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개
3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수목장 조성	공개
4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진입로 개설	공개
5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템플스테이 등 건립(허가사항 변경, 2차)	공개
6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	공개
7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저수지 조성(5차)	공개
8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침수도로 정비	공개
9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0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1	영천 송렬당 주변 교회건물 증축	공개
12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13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	공개
14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	공개
1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	공개
16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7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여장 설치	공개

【검토사항】

18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이전 정비 계획	공개
19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개
20	정읍 피향정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개
21	청도 대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 검토	공개
22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학술조사사업 검토	공개

【보고사항】		
23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	공개
24	안동 하회 충효당 주변정비 지침변경 승인내용 보고	공개
2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청원 안심사 대웅전 주변 수전설비 정비 -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석불 안면부 이물질 제거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독립유공자비 건립(허가사항 변경)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참나무시들음병 방재(허가사항 변경) -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조경수(과수) 재배지 조성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12-001

1.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2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회의(2012.10.18)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2.11.02~'12.12.01)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번지
 - 지정일 : 1967. 06. 23.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당초 보호구역 : 장락동 63 등 6필지 10,122㎡
 - 변경 보호구역 : 장락동 70-1 등 11필지 17,754㎡(중 5필지 7,632㎡)
- (4) 신청사유
 - 석탑 주변 연접지역으로 사지와 관련된 건물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 발굴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제천시장 의견

- 당해문화재의 보존가치 : 모전석탑은 이형적인 석탑 형식으로 지역적 분포 및 희소성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이므로, 조사 완료된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국보 및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되어야 함.
- 보호구역 확대 예정 부지는 해당 문화재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관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임(농사용 시설물 등의 설치 시 경관 보존 확보 불가).
-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은 제천시 소유이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논 및 야산으로 보존에 따른 재산권 영향은 미미함.
-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 : 제천시 서쪽에 평야지대로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일부 구릉이 남아 있음.

(2)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의결내용

- 현재 석탑 주변 발굴조사로 장락사지의 규모가 개략적이거나 파악된 상태이나, 금번 동의서 징구 지역은 미 발굴지역임과 동시에 당해 문화재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 보존 차원에서 확대지정이 필요함.

(3) 현지조사의견('12.10.09)

- 신청부지는 석탑의 남향에 위치하면서 보호구역과 접한 지역으로 사지의 가능성이 높고 경관보호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충북 제천시 장락동	63	전	1,514	1,514	제천시	기존
	65-1	전	5,035	5,035	제천시	"
	65-2	전	377	377	제천시	
	65-4	전	132	132	제천시	"
	66	전	2,519	2,519	제천시	"
	705	구거	5,871	545	국(농림부)	"
	70-1	답	2,707	2,707	○○○	추가지정
	70-2	답	1,626	1,626	○○○	"
	79-1	답	2,397	2,397	○○○	"
	69-7	천	844	844	○○○	"
	69-16	답	58	58	○○○	"
합계			23,080	17,754		

2.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2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회의(2012.10.18)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2.11.02~'12.12.01)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천시청
- (2) 대상문화재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외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당초 보호구역 : 송계리 1001-1 등 2필지 583㎡
 - 변경 보호구역 : 송계리 1002 등 9필지 2,826㎡(중 7필지 2,243㎡)
- (4) 신청사유
 - 해당부지는 빈신사지 및 백자요지 추정지역으로 사역규모 및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관리차원에서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제천시장 의견

- 사자빈신사지 석탑은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형적인 석탑으로 석탑 연구는 물론 건축, 조각, 미술사의 편년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석탑 형식 변천 연구에 기준이 되는 문화재이며,
- 석탑의 북쪽으로 4m 정도에는 옥개석 1매가 놓여 있음.
- 당해 부지는 해당 문화재 좌·우·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관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임(농사용 시설물 등의 설치 시 경관 보존 확보 불가).
-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은 제천시 소유이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보존에 따른 재산권 영향은 없음.
-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 :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과 마을회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어, 추가 개발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2)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의결내용

- 문화재 주변에는 펜션 및 마을회관 등의 공중 이용시설과 단독주택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구역 확대 예정지에 농사용 시설(하우스 등)이 설치될 경우 문화재의 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필요.

(3) 현지조사의견('12.10.09)

- 신청부지는 석탑 보호구역과 접한 지역으로 사지의 가능성이 높고 경관 보호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충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사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전	549	549	제천시	기존
	1001-1	전	34	34	제천시	기존
	1002	전	1,082	1,082	○○○	추가지정
	1002-2	전	131	131	○○○	"
	1003-5	전	473	473	○○○	"
	1003-6	전	121	121	"	"
	1003-7	전	18	18	"	"
	1005-3	대	90	90	"	"
	1005-4	대	328	328	"	"
합 계			2,826	2,826		

3.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수목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륵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산 11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수목장 조성
 - 신청면적 : 28,870m²
 - 수목장 조성 방법 : 별도의 구조물 설치 없이 기존 수목 주변에 유골을 묻고 수목에는 작은 표찰을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여주군)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므로 해당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필요.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등산로에서 10m 정도를 이격시켜 수목장을 조성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4.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진입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 하남시 소재 보물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 소재지 : 경기 하남시 교산동 산 10-3번지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하남시 교산동 66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45m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 신축되는 주택에 대한 진입로 개설로 주택의 경우 허용기준 상 제3구역에 해당되나, 진입로는 제1구역에 해당됨.
 - 부지면적 : 1,779m²
 - 진입로 개설 면적 : 115m²(부지면적 중 1,664m² 제외)
 - 포장 내용 : 콘크리트 포장

라. 지방자치단체(하남시)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 내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9명

5.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템플스테이 등 건립(허가사항 변경, 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에 템플스테이 선원 및 요사채 건립 사항에 주차장 조성을 추가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선원 및 요사채 건립 중에 주차장 조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1.03.17) : 조건부 가결
 - 건물의 양식이 초익공으로 적절치 않고, 전면의 콘크리트 건물은 경관을 고려, 조정하여 시행토록 함.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2.11.15) : 부결
 - 신청위치는 자연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용문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 99-6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1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58.3~107m(용문사은행나무와 이격거리 106.2m)

○ 사업내용(템플스테이 선원 및 요사채 건립)

	당 초	1차 신청	금 차	비 고
템플스테이 선원및요사채	- 심신수련관(115.92m ²) - 숙소 2동(각 112.32m ²)	- 당초와 같음.	- 당초와 같음.	
부대시설	- 부속동(화장실, 샤워실, 창고) 192m ²	- 당초와 같음.	- 당초와 같음.	
		- 주차장조성(1,137m ²) 추가	- 주차장조성(894m ²) 추가	

라. 지방자치단체(양평군) 의견

○ 템플스테이 주차장 추가 구성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사항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주차장 면적은 축소하고, 마감재료를 친환경재료로 조성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6.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보물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에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진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56-2
 - 지정일 : 1971.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427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90m 이격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확·포장
 - 도로연장 : L=481m, B=6.2m
 - 토공 : 흙쌓기 238m³, 흙깎기 277m³
 - 측구공 : 개거식(1.0×1.0), L=181m
 - 암거공 : 1.0×1.0 L=3.0m, 1.5×1.0 L=6.0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224m³, 아스콘표층 39.2a

라. 지방자치단체(진도군) 의견

- 진입도로 확포장하여 문화재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므로 경관과 어울리는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7.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저수지 조성(5차)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국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에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경관 및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07.15) : 보류
 - 댐 건설로 인하여 현상변화, 경관변화 등에 대한 도면과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제시할 것.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8.16) : 보류
 - 갈수기, 만수위, 홍수위에 대한 경관변화의 시뮬레이션 검토 후 재심의.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10.18) : 부결
 - 저수지에 대한 만수위와 홍수위를 철감선사탑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켜 문화재를 보호토록 함.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11.15) : 보류
 - 수위를 낮추는 안과 매립안을 병행하는 계획과 매립후의 지형변형도를 보완하여 추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 (2) 대상문화재 :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등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662m(홍수위 및 만수위)
 - 사업내용(저수지 신설 및 도로이설)
 - 유역면적 : 700ha
 - 수혜면적 : 174ha(보충 30ha, 신규 144ha)
 - 개발면적 : 174ha
 - 생활용수 : 1,300m³/일(3,700명)
 - 환경용수 : 1,100m³/일(180일)
 - 주요공사
 - 수원공 : 쌍봉제(당초 Q=188만톤 ⇒ 변경 Q=185만톤 감3.2만톤)
 - 제 당 : L=235m, H=39.14m(중심점토코어형), 여수토 : L=52m, H=1.2m
 - 방수로 : L=228m, B=9.0m, 복 통 : L=180m, 단면 2R=2.5m(표준마제형), 취수탑 : H=31m, D=5m
 - 도로 : 1.43km
 - 이설도로 : 1.31km(B=10m, 아스콘 포장)
 - 진입도로 : 0.12km(B=5m, 콘크리트 포장)
 - 평야부
 - 용수로 : 3조 19.363km(용수간선 : 2조, 16.623km, 용수지선 : 1조, 2.740km)

라. 문화재안전성 예측 보고서 제출(용역자 : 경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 조사내용 : 문화재상태조사, 쌍봉제 건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 예측 등

- 조사결과 : 기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기존에 타 지역에 축조된 저수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쌍봉제 축조에 따른 주변의 기상변화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재의 손상이 기상, 특히 고습한 환경과 연관성이 큰 점으로 볼 때 쌍봉사 경내 문화재들이 쌍봉제 축조로 인해 손실이 가속화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다만, 저수지 축조 후의 변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축조 전·후 문화재 보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아울러 주변의 미기상 데이터 구축 필요.

※ 쌍봉제 축조 전·후에 10년 동안 1년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계획 제출(화순군 문화관광과-15467, '12.09.11)

마. 보완자료 제출(화순군 문화관광과-21516, '12.12.18)

- 매립 방법 및 매립 후 지형변형도 제출.

바. 의결사항

- 보류
 - 상류 성토를 생략하고 저수량 축소하는 방안으로 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8.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침수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보물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수해피해가 잦은 도로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수해로 침수가 잦은 국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제2구역 “관련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1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0m 이격
 - 사업내용 : 수해위험지역 도로정비
 - 기존도로 약 1,015.22m 성토 및 보강(원 지형 대비 최고 4.26m 성토)
 - 토공, 비탈면안전공, 배수공, 교량 2개소, 포장 및 부대공 등 1식

라. 지방자치단체(단양군) 의견

-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로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8m/경사지붕 11m”와 제6구역 “관련 법에 따라 처리지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2-20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70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70m 이격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기존 1층건물 철거)
 - 건축면적(연면적) : 200.45㎡(491.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트러스 경사지붕
 - 최고높이(층고) : 13.35m(지상 3층(일부 2층))

라. 지방자치단체(창녕군) 의견

- 동 삼층석탑의 진입부에 해당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3구역과 6구역에 걸쳐 있음. 3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업종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건임.
- 해당 사업부지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4~5층의 빌라도 인접하고 있는 등 주변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 신청한 사업 규모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0.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보물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8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498-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6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462㎡
 - 건축면적(연면적) : 71.4㎡(71.4㎡)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 지붕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4.5m

라. 지방자치단체(서천군)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내 위치해 있어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외부 색채는 저채도 색상을 사용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1. 영천 송렬당 주변 교회건물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송렬당」 주변 교회건물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교회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7.5m 이하” 및 공통사항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경동노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영천 송렬당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송렬당길(성내동) 1
 - 지정일 : 1970. 07.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성내동 18-2 외 1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0m
 - 사업내용 : 교회건물 증축
 - 기존 건물 10개동 중 5개동 철거 후 1동 증축
 - 대지면적 : 3,641m²
 - 건축면적 : 1,201.37m² (997.77m² 증가)

- 연 면 적 : 3,688.2㎡ (3408.57㎡ 증가)
- 건축구조 : RC조(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 1층 지상 3층, 16.8m(종탑높이 27.5m)
- 철거 부분 : 4개동(각 1층), 1개동(2층 건물높이 16m, 종탑높이 32m)
- 증축 부분 세부 내용

층 별	증축 A동	기존B동	기존C동	기존D동	기존E동	기존F동	면 적 (㎡)
지하1층	982.05 종교시설(교회)						982.05
지상1층	982.05 종교시설(교회)	76.03 사무실	42.98 창고	18.51 창고	19.80 창고	46.28 화장실	1185.65
지상2층	997.77 종교시설(교회)	76.03 사무실					1073.80
지상3층	446.70 종교시설(교회)						446.70
합 계	3408.57	152.06	42.98	18.51	19.80	46.28	3688.20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개별심의 대상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십자가 높이를 가능한 낮추도록 함.
 - 외부 유리를 무반사 외장재로 사용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조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0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0m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기존 화장실의 노후화 등으로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 추가 신설
 - 대지면적 : 266㎡
 - 건축면적(연면적) : 36㎡(36㎡) -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구조 : 축부 RC조(외편 화방벽, 기둥 및 인방 표현), 옥개부 한식목조, 민도리양식, 한식기와맞배지붕

- 터파기 깊이 : 약 2.3m (정화조 깊이 2.05m)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5.5m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안의 사업으로 문화재청 개별심의 대상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화장실 위치와 외관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3.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1층) 이하, 개발행위시 시굴조사 선행” 및 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3층)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3층)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푸른예천환경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2) 대상문화재 :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4-4
 - 지정일 : 1965. 07.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03-25 일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하수관거 매입공사
 - 사업목적 : 예천지역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매설
 - 공사내용 : 동본구역 하수관거 1,893m 매설
 - 신설(심도 1.5m, 관거 200mm - 하수전용관)
 - 기존(심도 1.2m, 관거 600mm - 우수전용관)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이 사업은 지표면 아래 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지표조사 결과 722m²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현상변경 기준안에 따라 2구역 이상은 개발행위시 시굴조사 선행하여야 하는 기준안에 따라 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4.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하수관로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일부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하며 제1구역 “원지형보존” 등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푸른예천환경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17-7 일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하수관거 매입공사
 - 사업목적 : 예천지역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매설
 - 공사내용 : 남본구역 하수관거 8,174m 매설, 자가펌프(3곳) 매설
 - 신설(심도 1.5~2.0m, 관거 200mm - 하수전용관)
 - 기존(심도 1.2m, 관거 600mm - 우수전용관)
 - 자가펌프(심도 1.5~2m, 너비 1.5m)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이 공사는 도로 아래를 대상하는 공사로, 지표조사 결과 남촌리 200-13번지 일대 846m²에 대해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먼저 선행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산3-3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16m
 - 사업내용 : 단독주택·창고 신축 및 진입로 개설
 - 대지면적 : 800㎡ (전석 쌓기 및 벤치플롭관 매설)
 - 건축면적(연면적) : 138.08㎡ (138.08㎡)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 지붕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6.062m
 - 진입로면적 : 613㎡ (콘크리트 포장)

라. 지방자치단체(성주군) 의견

- 해당 지역은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 평탄화되어 있으며, 문화재로부터 216m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경관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6.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산3-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2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60㎡ (전석 쌓기 및 벤치플롭관 매설)
 - 건축면적(연면적) : 128.33㎡ (128.33㎡)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 지붕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5.38m

라. 지방자치단체(성주군) 의견

- 해당 지역은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 평탄화되어 있으며, 문화재로부터 220m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경관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7.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여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북측성벽에 여장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의거 퇴락되어 허물어진 성벽을 청도 읍성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잔여구간 약 280m(직선거리)를 보수함에 있어 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동 안건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제10차, 2012.12.07.) 개최 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안임.
 - 여장설치시 인근주변의 같은 재질의 석재를 사용토록 한다.
 - 여장의 형식은 깎돌로 하고, 기존의 여장기초는 해체하여 정비한다.
 -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3타구간을 시범 시축한 다음 시행토록 한다.
 - 관련 상세도면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청도 석빙고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85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360번지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00m
- 사업내용 : 청도읍성 복원구간 북측 성벽 여장 설치
 - 성벽길이(여장길이) : 약 250m (326m)

라. 지방자치단체(청도군) 의견

- 청도읍성 일부구간의 보수(복원)사업이 200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2008년 동문에서 북문까지(240m) 완료되었으며, 2012년 북문에서 서문방면으로 약 240m를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중 관계전문가 자문과 여장설치의견에 따라 허가신청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12-018

18.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이전 정비 계획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에 보물 「창경궁 팔각칠층 석탑」의 이전정비계획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2년 10월 국정감사 시 「창경궁 팔각칠층석탑」이 창경궁과는 관련 없는 시설물로 이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이전정비계획을 부의하는 사항임.
- 본 건은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12.11.14)에서 이전 정비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궁능문화재과장)
- (2) 대상문화재 :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번지
- (3) 신 청 내 용 :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이전 정비계획
 - 위 치 : 창경궁 내 춘당지 부근
 - 이전 정비계획 : 석탑 정밀실측 및 보존처리 후 이전방안 검토.
 - ※ 현재 석탑은 지의류 및 풍화 등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밀 실측 및 보존처리 후 이전.

라. 검토의견(궁능문화재과)

- 초층 탑신부에 사각형의 대리석을 끼워 음각한 명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조성연대(1470년)를 알 수 있는 중국식 탑으로 보물(제1119호)로 지정됨.
- 이 탑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창경궁에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창경궁과는 이질적인 구조물이므로 국립중앙 박물관 등 적정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관계전문가 의견('12.10.18)

- 창경궁 팔각칠층석탑은 창경궁과는 이질적인 구조물이므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적당한 장소로 장기적으로는 이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하므로 이전하기 전에 실측과 보존처리 필요.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9.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동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당초 보호구역 : 신항리 135-1번지 1필지 405.2m²(지정면적 1.8m²포함)
 - 변경 보호구역 : 신항리 148-2번지 등 2필지 1,697.2m²(증 1,292m²)
- (4) 신청사유
 - 해당 문화재는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재로 문화재의 경관보존 관리 및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라. 참고사항

- 영동시장 의견
 - 해당 필지는 신항리삼존상과 인접한 필지로 1구역에 해당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토지로서, 문화재 경관보존 등 관리행위를 위하여 추가지정 신청함.

○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의결(2012.09.20) : 가결

-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재로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가지정 필요함.

마. 현지조사의견('12.11.21)

○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은 건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석조여래삼존입상과 인접한 필지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경관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사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임	4,231	405.2	○○○	기존
	148-2	답	1,292	1,292	○○○	추가
합 계			5,523	1,697.2		

20. 정읍 피향정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정읍시 소재 보물 「정읍 피향정」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정읍시장
- (2) 대상문화재 : 정읍 피향정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기존 보호구역 : 태창리 103번지 외 17필지 17,459㎡
 - 변경 보호구역 : 태창리 91번지 외 24필지 18,583㎡ (증 1,124㎡)
- (4) 신청사유
 - 해당 추가부지는 기존 보호구역과 접해있어 피향정 감시초소 및 공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로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관리차원에서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전북 문화재위원 조사의견
 - 피향정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현재 18필지에서 주변 7필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보호구역으로 추가 신청된 7필지를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피향정 보호구역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와 탐방객 편의목적의 시설 설치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지정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

- 피향정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문화재 가치 및 보존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요청.

마. 현지조사의견('12.12.10)

- 신청부지는 피향정의 측면에 해당되는 위치로 기존에 화장실 등의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인 신잠비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향정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정읍 피향정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	소유자	구분
계	24필지			17,459	205.2	17,253.8		
정읍시 태인면 창리	101-3	대지	107	107		107	정읍시	기 존
	1-1-5	"	26	26		26	"	
	101-6	"	52	52		52	"	
	102-1	도로	99	99		99	국유	
	102-2	대지	734	734	205.2	528.8	"	
	102-3	"	76	76		76	정읍시	
	102-4	"	473	473		473	국유	
	102-5	"	66	66		66	정읍시	
	102-8	"	102	102		102	"	
	103-2	유지	14,754	14,754		14,754	"	
	103-12	"	53	53		53	"	
	101-10	대지	19	19		19	"	
	94-3	"	92	92		92	"	
	102-6	"	516	516		516	"	
	93	"	41	41		41	"	
	94-1	"	94	94		94	"	
	95-2	"	10	10		10	"	
102-7	"	145	145		145	"		
정읍시 태인면 창리	91	대지	708	708		708	정읍시	추 가
	91-1	"	119	119		119	"	
	91-3	임야	1	1		1	"	
	91-4	"	6	6		6	"	
	92	대지	87	87		87	"	
	92-2	"	11	11		11	"	
	68-2	"	192	192		192	○○○	

21. 청도 대비사 대응전 종합정비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대비사 대응전」 종합정비에 따른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대비사 대응전」 종합정비에 따른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계획(안)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청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청도 대비사 대응전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590번지
 - 지 정 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종합정비계획
 - 주요 시설물
 - 대응전, 향로각, 상락원, 삼성각, 대비선원
 - 학술조사(정밀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대응전 후면 석축 정비 등
 - 주변정비 : 화장실 조성, 석축, 진입로 정비(구 진입로)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 ※ 자문회의 개최 현황
- 1,2차 의견 수렴회의(2012.10.30)
 - 1차 자문회의(2012.11.29)
 - 현재 확인된 자료들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와 주변지역 유적들을 포함한

-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조선시대 이 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비사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사역의 초창연대를 고증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 자료 및 유물을 확보하여야 함.
- 조선시대 사찰에는 많은 부속건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대비사의 경우 남아 있는 건물이 극히 제한적임으로 구체적인 건물의 물증을 찾아 낼 수 있는 시·발굴 조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발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현재의 건물도 최근에 조성되었지만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종합정비 계획은 사찰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면 많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
- 사찰로 진입하는 누각은 1993년 조사를 통해서 초석이 발견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 후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웅전은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단에 대한 정확한 고증자료가 확인될 경우 향후 중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사찰로 진입하는 진입로(구진입로 복원) 및 편의시설 등이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고증을 통해 확인된 조선후기 가람배치 격식에 맞는 사동중정형 가람배치 체계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대비사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나 각 건물 신축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 시행 시 개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22.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학술조사사업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학술조사를 완료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학술조사용역을 완료하고자 학술조사(안)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도군청
- (2) 대상문화재 :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학술조사(안) 검토
 - 주요 내용
 -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 일제강점기에 복원된 삼층석탑의 원형 고증 및 보존방안 등
 - 주변정비 : 동·서 삼층석탑 둘레 보호시설 정비 등
 - 사업기간 : 2012년 7월 2일~ 2012년 12월 3일(6개월)

※ 자문회의 개최 현황

- 2012.11.19
 -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탑으로 현재 대응보전 남쪽에 쌍탑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 일제강점기에 보수되면서 동탑의 상하층기단감석 및 서탑의 상륜부와 남면 팔부신중상이 신재로 교체되었고, 서탑의 북면 팔부신중상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 보수시 동서탑 상층기단 면석이 일부 잘려져 기단부의 구조적 균형을 잃었다.
- 서탑의 경우 상하층기단갑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석재로 조합되어 있고, 동탑의 경우 신재로 보수된 상층기단갑석의 상부 괴임이 1단으로 잘못 보수되었다.
- 동·서 삼층석탑은 전체를 해체하여 복원하는 것이 타당.
- 복원시 주변의 석탑재를 참조하고 해체실측을 통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한 다음 복원
- 양탑의 잘려져 나간 상층기단 면석은 원래의 크기대로 복원
- 서탑의 두 종류로 된 상층기단갑석은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복원하고, 동탑의 것은 서탑의 갑석을 이용해 복원
- 양탑의 하층기단 면석은 우주와 평주가 돌을새김으로 된 원 상태대로 복원
- 양탑의 상륜부는 원형을 고증해 복원
- 서탑의 북면에 위치해 있는 팔부중은 남면으로 위치를 바로잡아야 함
- 서탑의 남면에 새로 조성된 팔부중은 동탑의 북면에 위치해 있는 긴나라와 마후라가상을 기준으로 재조성하여 서탑 북면에 재배치 해야함.

라. 검토의견

-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은 양식과 조각수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9세기 경에 조성된 쌍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양탑은 1980년 지정 이후의 보수이력은 없으나 일제시대에 기단부가 무너지기 직전이던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때 팔부중상 등이 신재로 보충되면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서탑 상층기단부의 우주석 미 설치 사항은 남·북측 기단면석의 조각수법·양식·석재 재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면과 동서면의 길이가 1.92m×1.7m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정 이전의 보수 시에 신재가 보충되면서 동서측 면석이 짧아지므로 우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됨.
- 동탑의 하층과 상층기단 갑석 또한 남북면과 동서면의 길이가 1.92m×1.7m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신재가 보충되면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동·서 삼층석탑의 변형된 부분을 원형 복원할 경우 구조상 보존상태가 양호한 탑의 해체가 불가피하므로 추후 석탑의 해체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학술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보수·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석탑해체보수는 지양토록 함.

- 다만, 석탑에 대한 지의류 제거 등 보존처리와 보호책을 정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12-023

23.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2012년도 전라도 및 제주도 지역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실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보고자 :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건조물문화재 154점
(세부목록 따로 붙임)
- (3) 조사내용 (정기조사)
 - 목적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실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 매5년마다 실시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조사
 - 조사기간 : '12.02.29~'12.10.25(8개월)
 - 조사방법 : 용역조사(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라. 조사결과

- 조사대상의 구분
 - 재질별 : 석조문화재(116건)와 목조문화재(38건)
 - 조사분야별 : 보수정비, 보존처리, 환경개선
 - 등급별 : 1등급(아주양호),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불량), 5등급(아주불량)
- 종합적으로 상태등급을 구분했을 때, 정기조사 후 보존 및 관리조치가 필요한 4~5등급 대상이 15개소로 결론

마. 향후계획

- 보존상태 4등급 이상 문화재 15개소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 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예정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붙임] 정기조사 결과 조치 필요사항 및 종합 등급표

지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치 필요사항			종합 등급				
			보수 정비	보존 처리	환경 개선	1등급 (아주 양호)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불량)	5등급 (아주 불량)
군산	보물 제234호	군산 발산리 석등		√				√		
	보물 제276호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					√		
김제	보물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		
	보물 제22호	김제 금산사 노주			√			√		
	보물 제23호	김제 금산사 석련대		√					√	
	보물 제24호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	√			√			
	보물 제25호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	√				√		
	보물 제26호	김제 금산사 금강계단		√				√		
	보물 제27호	김제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						√	
	보물 제28호	김제 금산사 당간지주	√	√	√				√	
	보물 제29호	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		√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		
	보물 제828호	김제 금산사 석등					√			
	남원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		
보물 제30호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				√		
보물 제31호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	√					√	
보물 제32호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				√		
보물 제33호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		√			
보물 제34호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비		√				√		
보물 제35호		남원 실상사 석등		√				√		
보물 제36호		남원 실상사 승탑			√		√			
보물 제37호		남원 실상사 동서 삼층석탑	√	√				√		
보물 제38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			√			√		
보물 제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		√				√		
보물 제4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			√		
보물 제43호		남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		√			
보물 제281호		남원 광한루					√			
보물 제423호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			
보물 제1123호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	√	√					√
익산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 중						
	국보 제289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				√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		√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			√			
	보물 제236호	익산 미륵사지당간지주	√	√				√		
보물 제825호	익산 승림사 보광전			√				√		
전주	보물 제308호	전주 풍남문					√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			
	보물 제1578호	전주 경기전 정전		√	√				√	
정읍	보물 제167호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			√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		
	보물 제309호	정읍 천곡사지 칠층석탑		√	√			√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			
고창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		
	보물 제803호	고창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	√				√	

지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치 필요사항			종합 등급				
			보수 정비	보존 처리	환경 개선	1등급 (아주 양호)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불량)	5등급 (아주 불량)
전남	부안	보물 제1200호			√		√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		√				√
	완주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	
		보물 제608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						√
		보물 제124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				√			
		보물 제1244호	완주 송광사 종루					√		
	임실	보물 제1434호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	√			√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		√			√		
장수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						√	
전남	나주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		
		보물 제50호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			√		√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			
		보물 제461호	나주 칠천리 마애칠불상		√	√		√		
		보물 제462호	나주 칠천리 석조여래입상		√	√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			√		
	순천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					√
		보물 제263호	순천 송광사 하사당					√		
		보물 제302호	순천 송광사 약사전						√	
		보물 제303호	순천 송광사 영산전						√	
		보물 제395호	순천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					√		
		보물 제400호	순천 선암사 승선교				√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			√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			√		
		보물 제1117호	순천 선암사 대각암 승탑					√		
		보물 제1184호	순천 선암사 복승탑		√			√		
		보물 제1185호	순천 선암사 동승탑		√			√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	
	여수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	√					√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흥교				√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	√			
		보물 제1288호	여수 타루비			√	√			
	강진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				√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			√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	
		보물 제1396호	강진 백련사 사적비			√		√		
	고흥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		
		곡성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				√		
보물 제275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				√		

지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치 필요사항			종합 등급				
			보수 정비	보존 처리	환경 개선	1등급 (아주 양호)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불량)	5등급 (아주 불량)
구례	보물 제1322호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			
	국보 제12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	√			√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						√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승탑			√		√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승탑			√		√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						√	
	보물 제132호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			√		√			
	보물 제133호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			√		
	보물 제151호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	√			√		
	보물 제152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			√		
	보물 제153호	구례 연곡사 동승탑비		√	√		√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		√			
	보물 제299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					√		
	보물 제300호	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			√		√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					
광양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			
담양	보물 제111호	담양 개선사지 석등	√				√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			√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					√		
보성	보물 제304호	보성 벌교 흥교						√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	√		√			
	보물 제944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			√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			
영광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		
영암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			√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				
	보물 제1118호	영암 성룡사지 오층석탑			√		√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						√	
	보물 제1309호	영암 엄길리 암각 매항명		√				√		
	보물 제1395호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수미선사비					√			
보물 제1433호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			√				
장성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			√			
장흥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				√		
	보물 제155호	장흥 보림사 동승탑					√			
	보물 제156호	장흥 보림사 서승탑					√			
	보물 제157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			
	보물 제158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					√		
	보물 제795호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				
진도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				
함평	보물 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			

지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치 필요사항			종합 등급					
			보수 정비	보존 처리	환경 개선	1등급 (아주 양호)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불량)	5등급 (아주 불량)	
화 순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			√				
	보물 제170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			√				
	보물 제796호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			√			√			
	보물 제797호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			√			
	보물 제798호	화순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			√			
	보물 제1116호	화순 유마사 해련탑		√				√			
	해 남	국보 제308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	√		√			
		보물 제301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			
		보물 제320호	해남 대흥사 삼층석탑				√				
		보물 제503호	해남 명량대첩비				√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				√				
광 주	보물 제1347호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탑		√			√				
	남 구 동 구 북 구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			√			
		보물 제110호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			√			
		보물 제600호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		√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						
제 주	제 주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				√		

24. 안동 하회 충효당 주변정비 지침변경 승인내용 보고

가. 보고사항

2012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안동 하회 충효당」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지침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안동 하회 충효당」 주변정비 지침변경 승인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다. 사업현황

- (1) 대상문화재 : 안동 하회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 (2) 지침변경 승인일 : 2012. 09. 17.
- (3) 지침변경 승인내용

	○ .
	○ 가 .
	○ .

라. 행정 사항

- 충효당 소유자가 제출한 별당지에 대한 고증 자료 추가확보 및 발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되,
- 발굴에 따른 유구 확인 곤란 시 우리청과 재협의 하여 건립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2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충북 청원군 소재 「청원 안심사 대응전」 주변 수전설비 정비 등 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 계		5건		
청원 안심사 대응전 (보물 제664호)	충북 청원 (안심사주지)	○ 수전설비 정비 -전주(약 10m) 1기 교체 -옥외전기실 1개소 신설 -맨홀 3개소 매립 신설 -분전반 및 저압 전력간선 설비 공사 1식 등	조건부 허가 (전주는 눈에 띄지않는 위치로 변경, 전기실은 목재웬스로 차폐)	'12.12.17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84호)	강원 강릉 (강릉시장)	○ 석불 안면부 이물질 제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 허가	조건부 허가 (암석 탈변색 방지, 제거 후 약식세척 실시 등)	'12.12.07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국보 제6호)	충북 충주 (○○○)	○ 독립유공자비 건립(허가사항 변경) -높이 6.0m→6.1m -명각비 높이 증 0.42m -건립표석(1.02m), 및 시비(1.755m) 신설	허가 (변경허가 신청한 안대로 사업시행)	'12.12.06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82호)	울산 울주 (울주군수)	○ 참나무시들음병 방재(허가사항 변경) -참나무 벌채 약 30본 -참나무 시들음병, 고사목 등 제거	허가 (변경허가 신청한 안대로 사업시행)	'12.11.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423호)	전북 남원 (○○○)	○ 조경수(과수) 재배지 조성 - 절토 26,891㎡, 성토 3,889㎡ - 자연석채취 10,757㎡ - 씨드+거적 792㎡	허가 (기허가된 사항으로 기간이 지나 재신청됨)	'12.11.20.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